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과 내실있는 회의체 운영을 위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로 명칭 변경과 회의구성 조정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구성 개선(안 제3조)

안전에 관계없이 참석토록 한 당연직 구성원을 전원 삭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장만 참석하도록 회의 구성을 조정함.

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관련 제도 정비(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형식적인 제도는 정비하되, 회의장이 아닌 현장에서 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본 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심의·조정 대상”을 “회의”로,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을 “회의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건은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관련 기관에 회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 실무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차관회의
는”을 “회의 진행을 위해”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무조정실장은 관계기관의 이행상황을 필요시 점검·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u>	<u>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u>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u>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u> 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u> ----- -----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 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u>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u> (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 ----- ----- ----- <u>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국무총리, <u>기획재정부 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국토교통</u>	② ----- <u>회의</u> ----- ----- ----- ----- -----

부장관 및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제5조(회의) ① (생략)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④ (생략)

<신설>

제7조(국정현안점검조정실무회의)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국정현안점검조정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회의 상정안건 중 사전에 실

회의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안건은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회의는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관련 기관에 회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실무 협의 및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되고, 구성원은 실무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된다.

제8조(국정현안점검조정차관회의) ① 회의에 상정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조정을 위하여 회의에 국정현안점검조정차관회의를 둔다.

1. 실무회의에서 협의·조정되지 아니한 사항

2. 실무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정현안점검조정차관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삭 제>

제9조(자료의 제출 등) <u>회의, 실무 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차관회의는</u>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2. (생 략)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생 략) ② <u>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③ (생 략)	제9조(자료의 제출 등) <u>회의 진행을 위해</u> ----- ----- ----- -----. 1.·2. (현행과 같음)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무조정실장은 관계기관의 이행상황을 필요시 점검·확인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연 락 처	(044) 200 - 2057